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-39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5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사유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등 주요 개정내용 반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로 변경
- 나. 관련 법령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안 제1조)
- 다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·내부기구,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기능·구성,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·운영 사항 등 상위법령상 규정한 사항 삭제 및 미수록으로 중복 배제
- 라.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구성·운영 내용 신설(안 제4조, 제5조)
- 마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·운영 내용 변경(안 제6조)
- 바. 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사유 수록 (안 제9조, 제10조)

- 사. 조례 개정 전 기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부칙에 추가(안 부칙 제2조)
- 아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6. 3. 10. ~ 2016. 3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· 규칙 심의회 심의 · 의결(2016. 4. 29)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
- 바. 신 · 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 협의체,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 권리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
1.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

제3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의 공무원인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② 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.

제4조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

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.

1.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 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 3.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
 4.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② 실무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.

제5조(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) ①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 권리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 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 3.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
 4.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.

제6조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동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동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위원명단 공개)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

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(이하 “각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,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11조(간사)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협의체 관할 부서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.

제12조(회의)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.

1. 협의체 : 연 4회 이상
 2. 실무협의체, 동 협의체 : 연 6회 이상
-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공청회 등 개최)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5조(수당 등 지원)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제16조(운영세칙)** ① 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 관하여
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
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
② 동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, 필요시 동 실정에
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
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
및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1조의5 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,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를 설치·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 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제2조 삭제	제2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.
<p>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, 시행, 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2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</p> <p>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</p> <p>4.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</p>	<p>1.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</p> <p>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</p>

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② 삭제

③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(이하 "실무협의체"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구성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청장, 복지교육국장, 보건소장, 실무협의체 위원장은

제3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의 공무원인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② 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은 둔다.

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 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며, 복지 및 보건업무 관련 담당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⑥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과 겸임할 수 있다.

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·연구 또는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.

1.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
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3.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

4.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실무협의체에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의 부위원장을 둔다.

제5조(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)

①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

2.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·협력에 관한 사항

3.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

4.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

제4조의2(동 복지협의체 구성 · 운영) ① 구청장은 동 단위 복지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적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.
② 동 복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지역사회 내 인적 · 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, 지원
2. 긴급 · 위기사례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
3.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
4.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 사업 추진
5.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
④ 동 복지협의체는 동장을 당

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.

제6조(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동 협의체”라 한다)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②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동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,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⑤ 동 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⑦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위원명단 공개)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 제4항까지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(이하 "각 협의체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

제7조(위원명단 공개)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(이하 "각 협의체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,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

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	<p>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p> <p>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</p> <p>5.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/p>
제9조(간사 및 위원)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.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.	제11조(간사)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협의체 관할 부서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.
제10조(회의 등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	제12조(회의)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. 1. 협의체 : 연 4회 이상 2. 실무협의체, 동 협의체 : 연 6회 이상 ② 실무분과의 회의는 실무분과

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의록)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
3. 심의사항
4. 심의결과
5. 그 밖에 위원장(실무위원장 포함)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결사항의 처리)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

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(이하 "관계인 등"이라 한다)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4조(공청회 등의 개최)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5조(경비지원)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·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협의체 운영지원) 구청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,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

제13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심의·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공청회 등의 개최)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15조(수당 등 지원)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6조(운영세칙) ① 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 등에
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.

② 동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고, 필요시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동 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